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(안)

사 항 별 설 명 서

(복지·건설 위원회)



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

1. 주거급여(보조)

사회복지과 팀장 : 엄태섭(☎5 3 5 1) (생활보장팀) 담당 : 이정억(☎5 3 5 3)

□ 사업목적

○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.

□ 사업개요

o 기 가 : 매월

○ 사업대상 : 주거급여 수급자

○ 내 용: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 지급

o 재원부담: 국비 60%, 시비28%, 구비12%

○ 근 거

-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가내시 통보 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-28013(2014.11.04.)】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	예 산 과 목		기정예산	증 감	사 출 내 역
편성목	통계목	추경예산(안)	기정메진	0 (0	선 둘 내 박
	계	6,637,425	6,437,425	200,000	
		6,637,425	6,437,425	200,000	
일 반	사회보장적	(국: 3,982,455)	(국: 3,982,455)	(국: 0)	○주거급여(기초생활수급자)
보상금	수혜금	(시: 1,858,479)	(시: 1,858,479)	(시: 0)	6,637,425,000원*1
		(구: 796,491)	(구: 596,491)	(구: 200,000)	

※ 증감사유: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구비 일부 미확보

□ 사업효과

○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도모

2. 복지시설유지보수

사회복지과 팀장 : 조현우(☎5361) (노인복지팀) 당당 : 이미영(☎5363)

□ 사업목적

경로당에 설치된 출입문 자동계폐장치의 유지보수를 통한 여가시설
이용 활성화

□ 사업개요

o 추진기간: 2015년 1월 ~ 12월

ㅇ 추진내용

- 대 상:경로당

- 내 용: 경로당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

o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**47**조(비용의 보조)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2015년	기정예산	ر ا ح	산 출 내 역
편성목	통계목	추경예산(안)	기정메신	증 감	산 출 내 역
계		3,630	6,000	△2,370	
일반 운영비	공공운영비	3,630	6,000	△2,370	○복지시설비상문자동개폐기 유지보수 3,630,000원*1

※ 증감사유 :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계약기간 축소, 점검대상 축소(27개 → 22개)

□ 사업효과

○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노인여가시설 이용활성화

3. 경로당운영(보조)

사회복지과 팀장 : 조현우(☎5361) (노인복지팀) 담당 : 김수정(☎5364)

□ 사업목적

○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양곡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: 2015년 1월 ~ 12월

○ 추진내용

- 경로당현황 : 49개소(구립 27개소, 사립 22개소)

- 지원내용 : 경로당 운영 냉·난방비등 각종 공공요금 과 정부양곡

○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

- **2015**년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【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-**676(2015.1.13.)**】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괴 편성목 통	ㅏ 목 :계목	2015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계		57,052	16,281	40,771	
일반 공 운영비 운	- 공 - 영비	57,052 (국 5,706) (시 25,673) (구 25,673)	16,281 (시 8,141) (구 8,140)	40,771 (국 5,706) (시 17,532) (구 17,533)	○ 경로당 난방비지원(특별) (국:시:구=10:45:45) 300,000원×5개월×27개소 = 40,500,000원 (추가 24,219,000원) - 국비 4,050,000원 (추가 4,050,000원) - 시비 18,225,000원 (추가 10,084,000원) - 구비 18,225,000원 (추가 10,085,000원) ○ 경로당 냉방비 지원(신규) (국:시:구=10:45:45) 50,000원×2개월×27개소 = 2,700,000원 - 국비 270,000원 - 시비 1,215,000원 - 구비 1,215,000원 ○ 경로당 양곡비 지원(신규) (국:시:구=10:45:45) 47,110원(1포)×6포×49개소 = 13,850,340원 - 국비 1,385,020원 - 시비 6,232,660원 - 구비 6,232,660원

※ 증감사유: 보조사업 추가 및 신규 편성

□ 사업효과

○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4.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(보조)

사회복지과 팀장 : 조현우(☎5361) (노인복지팀) 담당 : 김보혜(☎5366)

□ 사업목적

○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·정보센터로의 기능을 혁신함으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
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: 2015년 1월 ~ 12월

○ 추진내용

- 수행기관 : 약수노인종합복지관

- 추진방법 :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

등을 연계하여,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 건강운동

레크레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

- 운영현황 : 경로당 45개소, 21개 프로그램 지원

○ 추진근거 : 노인복지법 제 47조(비용의 보조) 및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

운영 및 관리규칙 제 12조(운영활성화)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편성목	과 목 통계목	2015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-	계	0	15,000	△ 15,000	
민간이전	사회복지 사업보조	0	15,000	△ 15,000	○경로당 활성화 사업 0원

※ 증감사유 :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활성화 시비보조금(77,752천원)을 최대한 활용, 구비 절감

□ 사업효과

○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로 기능 혁신

5.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지원

사회복지과 팀장 : 조현우(☎5361) (노인복지팀) 담당 : 김보혜(☎5366)

□ 사업목적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에 대해 자치단체 분담비율을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여 재가급여비용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2015년 1월 ~ 12월

○ 추진내용

- 사업내용 :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

재가급여비 지원

- 지원방법 : 장기요양보험료+국가·지자체부담+본인일부부담금

- 부 담 율 : 지자체부담금 중 재가급여분 구비부담(시비30%, 구비70%)

※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[별표]

O 추진근거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

-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2011.7.28시행)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편성목	과 목 통계목	2015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	계	474,355	695,851	△221,496	
일반보상금	사회보장적 수혜금	474,355	695,851	△221,496	○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474,354,690원*1 (구 474,354,690)

※ 증감사유: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재가급여 2015년 구비 분담금 확정
【서울시 어르신복지과-26061(2014.12.30.)】

□ 사업효과

○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

6. 장애인단체 지원

사회복지과 팀장 : 주상천(☎5371) (장애인복지팀) 담당 : 강경순(☎5372)

□ 사업목적

 (사)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의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증액 지원으로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임대차 계약현황

○ 시 설 명 :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(지적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사무실 겸용사용)

○ 소 재 지 : 중구 다산로22길 11(신당동), 지상 1~2층(연면적160.79㎡)

○ 임대인/임차인: 옥무석 /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사용자: 지적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(지부장: 김경일)

○ 임차기간: 2009.4.14. ~ 현재까지

○ 임차현황 : 보증금 2억(구비), 월세 150만원(자부담)

※ 2015. 4월부터 보증급 인상분 미탁보호 월세 50만원 추가지급 중

o 임대인의 재계약 요구사항 (2015. 4월)

- 임대보증금 4억원 인상요구 : 현 2억원 ⇒ 6억원

지적장애인협회 협상(안): 보증금 현 2억 → 4억/ 월세 100만원

-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임차료 인상분 요청: 2억

※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(2015.4)에 따라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재계약을 위해서는 최근 시세를 반영한 임차료 증액지원 필요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2015년	기재에서	, J.	사호비여
편성목	통계목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	계	200,000	0	200,000	
일반 운영비	시무 관리비	200,000	0	200,000	○ 지적장애인협회 임차보증금(증액분) 200,000,000원*1

※ 증감사유: 임대 계약기간 만료(2015.4월)로 임대인이 임차료 인상요구

□ 사업효과

○ 지적장애인 단체의 지속지원으로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력 향상

7. 장애인연금 지급(보조)

사회복지과 팀장 : 주상천(☎ 5371) (장애인복지팀) 담당 : 정지은(☎ 5374)

□ 사업목적

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제도

□ 사업개요

○ 근 거: 장애인연금법

○ 기 가 : 2015년 1월 ~ 12월

○ 사업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인) 중 본인과 배우자의

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o 재원부담 : 국비 **50%**, 시비 **32.5%**, 구비 **17.5%** (매칭사업)

○ 내 용 :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~282.6천원 지급(4월부터 금액 인상)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2015년	21.23.01.11	- J	11 - 11 O
편성목	통계목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	계	2,251,295	2,130,318	120,977	
일반보상금	시회보장적 수 혜 금	2,251,295 (국: 1,125,648) (시: 731,670) (구: 393,977)	(국: 1,125,648) (시: 731,670)	(국: 0)	○ 장애인연금지원 2,251,295,000원*1

* 중감사유: 2015년 본예산 판성시 구비 일부 미확보.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기, 급여액 중기

- 2015년도 확정내시 통보 【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-18785(2014.12.15.)】
-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급자 매월 증가: **2015.10**월 **610**명 → **2015.4**월 **645**명
- 2015.4월부터 장애연금 기초 급하액(2,600원) 증가 [서울시 장애인지립자원과-5774(2015.3.27.)]
- 2015.4월타 장애연금 부가 급여액(2.600원) 증가 [서울시 장애(지립자원과-6796(2015.4.13.)]
- 2015.5월부터 장애인연금 미수급대상자 600명 홍보 중(수급자 증가 예상)

□ 사업효과

○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

8. 기본경비

사회복지과 팀장 : 엄태섭(☎5 3 5 1) (생활보장팀) 담당 : 백은경(☎5 3 5 4)

□ 사업목적

 부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및 기본업무추진급량비,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위한 경비

□ 사업개요

o 기 간: 2015년 1월 ~ 12월

○ 사업대상 : 사회복지과 직원

이 내 용: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(급량비), 국내여비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신 편성목	. 과 목 통계목	2015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<u>а</u>		114,165	111,210	2,955	
일반 운영비	사무관리비	38,285	37,290	995	○ 기본사무용품 15,000원*23명 ○ 기본업무추진급량비 (7,000원*22명*20식*12월) + (7,000원*1명*20식*7월)
여비	국내여비	75,880	73,920	1,960	○ 기본업무수행여비 (20,000원*22명*14일*12월) + (20,000원*1명*14일*7월)

※ 증감사유: **2015**년 **5**월 **13**일 직원 복직에 따른 현원 증가**(22**명→**23**명)

9.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

(특별회계)

사회복지과 팀장 : 백영규(☎5391) (자활주거팀) 담당 : 강민정(☎5394)

□ 사업목적

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사회복지분야, 기초생활보장부문,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, 생활안정자금 지원(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)
- o 추진기간: **2015**년 **1**월 ~ **12**월
- 추진내용
-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
 - · 중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,000천원 이하인 가구
 - · 주민소득지원금 지원: 40,000천원이하, 생활안정자금 지원: 20,000천원이하
- 상환조건 : **2**년 거치 **2**년 균등분할 상환(이자율 연**2.8%**)
- 융자방법: 수탁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와 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후 대출실행
- 지원실적: 2015년 현재 3건 60,000천원
- 추진근거: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

□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 신	과 목	2015년	71740111	ح ا	사 출 내 역
편성목	통계목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계		1,590,073	1,173,376	416,697	구비 100%
융지금	민간융자금	1,590,073	1,173,376	416,697	○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 1,590,072,238원*1

※ 증감사유: 융자금 화수수입증가로 순세계잉여금 증가

□ 사업효과

-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
-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녀학자금 및 영세 상행위 지원자금으로 생활안정 도모